

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: 도로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
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: 도로)을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경미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사항으로 결정(변경)하고, 같은 법 제32조 및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
관계서류는 서구청(도시개발과, 032)560-4762)에 갖추어 놓았습니다.

2019. 4. 15.

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



1. 결정(변경) 취지

-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4호 다목의 기반시설(도로)의 변경에 관한 계획

2. 위 치: 인천광역시 서구 검암동 69-9번지 일원

3.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조서

- 도시계획시설(도로) 결정(변경) 조서

구분	규모				기능	연장 (m)	기점	종점	사용 형태	최초 결정일	비고
	등급	류별	번호	폭원 (m)							
기정	소로	1	31	10	국지 도로	430	소로1-30	시천동 37-3	일반 도로	2018.7.23.	(인천광역시 서구고시 제2018.96호)
변경	소로	1	31	10	국지 도로	430	소로1-30	시천동 37-3	일반 도로	"	중점부 시설폭변경

- 도시계획시설(도로) 결정(변경) 사유서

도로명	변 경 내 용	변 경 사 유
소로1-31호선	중점부 도로시설폭 변경	· 지적불부합에 따른 선형 조정 및 중점 회전교차로부 시설폭 축소

4. 지형도면: 게재생략(갖추어 둔 장소의 지형도면과 같음)

-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(<http://luris.mltm.go.kr/>)에서 열람 가능

